

위대한 여정 새로운 도약



식품의약품안전처

# 식품의약품안전처

대한민국 정부 3.0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「의료기기법」 일부개정법률 개정·공포 알림

「의료기기법」 일부개정법률이 '16. 12. 2.(금)자로 불입과 같이 개정·공포 되었으며, 개정내용은 '16. 12. 2.(금)자 관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(<http://www.law.go.kr>)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불입 의료기기법 (법률 제14330호). 끝.



## 식품의약품안전처



수신자 국무조정실장, 보건복지부장관,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장, 중소기업협회장,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이사장, 한국치과기재산업협회장, 대한의료기기산업협회장, 대한의사협회장, 대한치과 의사협회장, 대한병원협회장, (재)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원장

주무관 이훈 사무관 오영진 의료기기정책 전결 2016. 12. 9. 과장 신준수

협조자

시행 의료기기정책과-9921 (2016. 12. 9.) 접수

우 28166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5로 303, ((주)국 / www.mfds.go.kr  
도토거) 4층 의료기기정책과

전화번호 043-230-0415 팩스번호 043-230-0400 / hoonlee@kfda.go.kr / 대한민국 공개

국민중심의 서비스 정부로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니다.